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51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 판매채널을 육성하고 모집서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단종손해보험”을 “간단손해보험”으로 용어 변경(안 제4-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제3항, 제4-6조제2항 및 제7-73조제2항)

나. 사외이사의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기관의 임직원 겸직 허용(안 제4-9조제3항)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의 경우 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기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

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기계약 계산기준 완화(안 제4-40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단체보험방식으로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 이익이 없고, 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자기계약을 계산하도록 단서조항 신설.

라. 전자적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배부할 수 있는 대상에 보험증권을 포함(안 제7-45조의2제1항)

보험관련 서류 중 보험증권에 대해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회사의 편의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hs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